

의안번호	2217429
의 퇴 인	김병주의원
회 답 일	2026.10.13.
추 계 번호	26D140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7급 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500만원, 2032년 1억 1,0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5억 6,300만원(연평균 1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7급 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안 제79조제1항 및 제5항)	105	113	115	120	110	563	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9조제1항 및 제5항 (여비 등의 국고부담)	안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함(제1항제5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지원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9조제1항 및 제5항 (여비 등의 국고부담)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신체등급 판정에 필요한 진료 및 치료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지원대상으로 가정함
 - 경제적 취약계층 비율은 병역판정검사 시 7급 및 판정보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검사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자료(2022~2023년) 평균비율을 적용함
 - 치료단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¹⁾을 활용하여,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 금액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²⁾을 적용하여 산정함
 - 다만, 의료급여자의 경우, 추계기간 본인부담금 진료비 1,000원, 약제비 500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 검사비는 병역판정검사 사업 내에 편성되어 있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비³⁾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에서 제외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026.1)

2) 소비자물가상승률(2026. 7.)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소비자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3) 의료기관 위탁검사비 사업 예산은 2026년 기준 8억 1,300만원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7급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의 치료비 지원(안 제79조제1항 및 제5항)

- (지원대상) 추계기간 병역판정검사대상 예측인원에 병역판정검사 시 7급 및 판정보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검사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자료(2022~2023년) 평균을 적용하여 산정

[표 2] 병역판정 7급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자 현황

(단위: 명, %)

구 분	병역판정 검사 인원	7급 판정자		경제적 취약자(7급 판정자)					
				계		정신건강의학과		그 외 과목	
2022	248,361	6,913	(2.78)	704	(0.28)	144	(0.06)	560	(0.23)
2023	238,604	6,387	(2.68)	555	(0.23)	136	(0.06)	419	(0.18)
평균	243,483	6,650	(2.73)	630	(0.26)	140	(0.06)	490	(0.20)

주: 1. ()안은 병역판정 검사인원 대비 비율임

2. 경제적 취약자 중 의료급여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90명(64.3%), 그 외 과목 260명(53.1%)임
자료: 병무청

[표 3] 지원대상자 수 추정

(단위: 명)

			2028	2029	2030	2031	2032
병역판정검사대상			230,358	244,010	244,355	251,455	226,388
경제적 취약자(7급 판정자)			596	631	632	650	585
	정신건강의학과		132	140	141	145	130
		의료급여대상	85	90	90	93	84
		기타 경제적 취약자	47	50	50	52	46
	그외과목		464	491	492	506	456
		의료급여대상	246	261	261	269	242
		기타 경제적 취약자	218	230	231	238	21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 의료급여자는 추계기간 현재의 본인부담금(진료비 1,000원, 약제비 500원)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외 경제적 취약자는 2026년 1월 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4)에 따라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함
- 치료지원횟수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의학과는 1년 지원하되 진료횟수는 첫 3개월은 주1회, 그 후 3개월은 2주에 1회, 그 후 6개월은 월 1회로 가정하여 1년간 26회로 가정하며, 그 외 과목은 6개월 지원하되 진료횟수는 2주 1회로 가정함

[표 4] 지원단가(2026)

(단위: 원, 회)

구분		의료급여자				그 외 취약계층			
		초진	재진	횟수	지원금액	초진	재진	횟수	지원금액
정신건강 의학과	진찰료	1,000	1,000	25	26,000	5,650	4,010	25	105,900
	상담료	0	0	25	0	5,230	3,200	25	85,230
	약제비		500	26	13,000		30,000	12	360,000
	합계				39,000				551,130
그 외 과목	진찰료		1,000	26	26,000	5,650	4,010	25	105,900
	약제비		500	26	13,000		30,000	6	180,000
	합계				39,000				285,900

주: 1.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026.1.)의 각 항목별 상대가치점수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에 고시된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
 2. 진료횟수는 첫 3개월은 주 1회, 그 후 3개월은 2주 1회, 그 후 6개월은 월 1회로 가정하여, 초진을 포함한 총 진료횟수이며, 약제비는 월 1회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지원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한 지원대상별 지원단가는 아래 표와 같음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2026.1)의 의원급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

[표 5] 지원단가 추정

(단위: 원)

		2028	2029	2030	2031	2032
정신건강 의학과	의료급여대상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기타 경제적 취약자	573,171	584,634	596,327	608,254	620,419
그 외 과목	의료급여대상	39,000	39,000	39,000	39,000	39,000
	기타 경제적 취약자	297,334	303,281	309,347	315,534	321,84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추계결과) 연도별 지원대상에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추가재정소요는 아래 표와 같음

[표 6] 7급 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정신건강 의학과	의료급여대상	3	4	4	4	3	17
	기타 경제적 취약자	27	29	30	31	29	147
그 외 과목	의료급여대상	10	10	10	10	9	50
	기타 경제적 취약자	65	70	71	75	69	350
합계		105	113	115	120	110	56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7급 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1억 500만원, 2032년 1억 1,000만원 등 추계기간 총 5억 6,300만원(연평균 1억 1,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7급 판정자 중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안 제79조제1항 및 제5항)	105	113	115	120	110	563	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병역판정검사 시 7급 및 판정보류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검사 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를 체크하도록 한 자료(2022~2023년) 평균비율과 2026년 1월 기준 「건강보험료율」에 따라 의원급에서 진찰료, 상담료, 약제비를 지원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로, 실제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